

◎ 해운대 실버홈 일반 이용료 (2022.10.01.기준)

구분	금액	단위	산출내역
장기요양 1등급	696,920	28일	- 본인부담금 $78,20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28\text{일} = 437,92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28\text{일} = 231,0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일} = 28,000\text{원}$
	746,700	30일	- 본인부담금 $78,20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30\text{일} = 469,20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0\text{일} = 247,5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0\text{일} = 30,000\text{원}$
	771,590	31일	- 본인부담금 $78,20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31\text{일} = 484,84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1\text{일} = 255,75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1\text{일} = 31,000\text{원}$
장기요양 2등급	665,280	28일	- 본인부담금 $72,55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28\text{일} = 406,28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28\text{일} = 231,0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일} = 28,000\text{원}$
	712,800	30일	- 본인부담금 $72,55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30\text{일} = 435,30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0\text{일} = 247,5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0\text{일} = 30,000\text{원}$
	736,560	31일	- 본인부담금 $72,55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31\text{일} = 449,81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1\text{일} = 255,75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1\text{일} = 31,000\text{원}$
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	642,660	28일	- 본인부담금 $68,51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28\text{일} = 383,66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28\text{일} = 231,0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일} = 28,000\text{원}$
	688,560	30일	- 본인부담금 $68,51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30\text{일} = 411,06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0\text{일} = 247,5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0\text{일} = 30,000\text{원}$
	711,510	31일	- 본인부담금 $68,510\text{원} \times 20\% \times 31\text{일} = 424,76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1\text{일} = 255,75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1\text{일} = 31,000\text{원}$

12%

◎ 해운대 실버홈 감경/의료수급자 이용료 (2022.10.01기준)

구분	금액	단위	산출내역
장기요양 1등급	521,750	28일	- 본인부담금 $78,20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28\text{일} = 262,75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28\text{일} = 231,0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일} = 28,000\text{원}$
	559,020	30일	- 본인부담금 $78,20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30\text{일} = 281,52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0\text{일} = 247,5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0\text{일} = 30,000\text{원}$
	577,650	31일	- 본인부담금 $78,20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31\text{일} = 290,90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1\text{일} = 255,75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1\text{일} = 31,000\text{원}$
장기요양 2등급	502,770	28일	- 본인부담금 $72,55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28\text{일} = 243,77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28\text{일} = 231,0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일} = 28,000\text{원}$
	538,680	30일	- 본인부담금 $72,55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30\text{일} = 261,18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0\text{일} = 247,5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0\text{일} = 30,000\text{원}$
	556,640	31일	- 본인부담금 $72,55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31\text{일} = 269,89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1\text{일} = 255,75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1\text{일} = 31,000\text{원}$
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	489,190	28일	- 본인부담금 $68,51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28\text{일} = 230,19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28\text{일} = 231,0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28\text{일} = 28,000\text{원}$
	524,140	30일	- 본인부담금 $68,51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30\text{일} = 246,64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0\text{일} = 247,50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0\text{일} = 30,000\text{원}$
	541,610	31일	- 본인부담금 $68,510\text{원} \times 12\% \times 31\text{일} = 254,860\text{원}$ - 식 비 $2,750\text{원} \times 3\text{식} \times 31\text{일} = 255,750\text{원}$ - 간 식 비 $1,000\text{원} \times 31\text{일} = 31,000\text{원}$

8%

◎ 해운대 실버홈 감경/의료수급자 이용료 (2022.10.01기준)

구분	금액	단위	산출내역
장기요양 1등급	434,170	28일	- 본인부담금 78,200원 x 8% x 28일 = 175,17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28일 = 231,00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28일 = 28,000원
	465,180	30일	- 본인부담금 78,200원 x 8% x 30일 = 187,68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30일 = 247,50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30일 = 30,000원
	480,690	31일	- 본인부담금 78,200원 x 8% x 31일 = 193,94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31일 = 255,75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31일 = 31,000원
장기요양 2등급	421,510	28일	- 본인부담금 72,550원 x 8% x 28일 = 162,51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28일 = 231,00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28일 = 28,000원
	451,620	30일	- 본인부담금 72,550원 x 8% x 30일 = 174,12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30일 = 247,50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30일 = 30,000원
	466,670	31일	- 본인부담금 72,550원 x 8% x 31일 = 179,92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31일 = 255,75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31일 = 31,000원
장기요양 3등급 4등급 5등급	412,460	28일	- 본인부담금 68,510원 x 8% x 28일 = 153,46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28일 = 231,00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28일 = 28,000원
	441,920	30일	- 본인부담금 68,510원 x 8% x 30일 = 164,42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30일 = 247,50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30일 = 30,000원
	456,650	31일	- 본인부담금 68,510원 x 8% x 31일 = 169,900원 - 식 비 2,750원 x 3식 x 31일 = 255,750원 - 간 식 비 1,000원 x 31일 = 31,000원

【해운대실버홈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】 1. 계약은 입소자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.

2.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원칙으로 하여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. 이하 ‘갑’은 이용자, ‘을’은 제공자, ‘병’은 대리인 또는 보호자(신원인수인)을 칭한다.

3. 계약기간

-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하며, 등급변화나 수가 변동으로 인한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고 계약 해제의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종료 시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하여 변경 계약서를 작성 한다. 다만, 매년 인상되는 수가에 따른 입소비 인상에 관한 계약은 서면통보로 계약서 재작성을 갈음한다.
- ⑥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4. 입소 · 이용료 납부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용료는 입소일 기준 7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.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이내에 납부하기로 한다.(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입금, 카드결제, 현금수납 등 보호자의 편의에 따라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5.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

※ 시설급여 (1일)

구 분		1등급	2등급	3~5등급
요양 급여	노인요양시설	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시설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		
비 급 여	상급침실 이용료	없음		
	식재료비/간식비	당해연도 입소비 안내문에 따름 (별지참조)		
	이/미용료등	.		

※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

구분		일반(20%)	경감(12%)	경감(8%)	기초수급권자(0%)
본인 부담 금	1등급				0
	2등급				0
	3~5등급				0
※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매년 적용 되는 「장기요양 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」 내용에 따른다					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부담금)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(일반)

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2 (감경)

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 (감경)

※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(1)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
(2) 상급침실 이용료

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
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
- (3) 이·미용비 :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: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6. 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

- 1)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
- 2)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
- 3)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 주장
- 4)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

7.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

- 1)서비스전 입소자의 산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 없이 제공해야 한다
- 2)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한다(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된다)
- 3)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
(해외이주,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)
- 4)서비스 대상자의 상태 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.

8. 제공자의 의무

- 이용자의 건강관리 협조
- 이용자의 신변이상을 대리인 또는 보호자(신원인수인)에게 즉시 연락
-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-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-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

9. 계약의 해제

- 1) ‘갑’ 의 해지

① ‘갑’ 과 ‘병’ 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2) ‘을’ 의 해지

① ‘갑’ 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
② 타 입소/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
③ ‘갑’ 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 은 ‘갑’ 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 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